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 :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일시 2012년 11월 10일(토) 14:00~18:00

장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5층)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포럼
(사)제주미래비전연구원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정책토론회 일정

■ 등록 및 접수(14:00~14:30)

■ 개회(14:30~14:40)

- 개회사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고운호 (사)제주미래비전연구원 이사장
- 축사
 -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I 세션(14:40~16:20) /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의 전망과 과제”

- 좌 장 /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발 표 /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 지정토론 / 강순원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상무이사
이영호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 휴 식(16:20~16:30)

■ II 세션(16:30~18:00)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협동조합기본법”

- 좌 장 / 김영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발 표 / 박창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 지정토론 / 오태문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강종우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실장

■ 폐회

I 세션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의 전망과 과제”

좌 장 /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 표 /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지정토론 / **강순원**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상무이사

이영호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의 전망과 과제

2012. 11.

최혁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목 차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방향
- 사회적경제 관점의 부각과 정책적 과제
- 기타 - 정책 흐름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



-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흐름과 요구에 발맞추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추진

-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인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각 나라의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환경 개선을 권고하였음

- 글로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고령화, 만성적인 경기불안,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정부나 영리기업 위주의 시장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 반영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진입지원사업(자활공동체,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등)이 선택가능한 법인격 보장
- 복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회적협동조합)
-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의 근로자들의 고용조건 개선 (노동자협동조합)
- 협동조합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보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 시민자본의 사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창출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자본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 재구성
- 시민출자를 통한 장농자본의 사회화
- 지역사회의 인적 역량이 확대
- 새로운 공익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 ”

- 사회통합, 지역재생,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활성화될 것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진입지원사업(자활공동체, 마을기업 지원사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등)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공신력있는 법인격 획득이 가능
- 법인격 자체에 공신력이 높아짐으로서 시민출자, 지역사회 기부, 공공사업 참여 등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역량이 강화될 것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



○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은 연합회 구성이 가능하여 서로 다른 지원체계 속에서 설립된 다양한 유사조직들(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이 필요에 따라 사업연합 구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들이 정부의 재정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쟁력과 자립역량을 높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



○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 협동조합 방식의 소자본 공동창업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창업자에 비하여 창업성공율이 높아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 발생
- 해외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 창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건정성이 강화되는 부대효과가 발생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협동조합을 지역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정할 것”

-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 운영시스템, 소유구조 및 분배구조가 다른 독특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단히 효과적인 경제조직이라는 것을 지방정부가 인정해야 함
- 현재 전 세계 매출 상위 300개 협동조합들의 1년 매출 총액은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날 협동조합에서 일자리를 제공받거나 협동조합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억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협동조합을 지역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정할 것”

- 특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있어 상당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강화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은 상당한 역량을 지닌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함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특별한 지원 · 육성정책 NO!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 YES!”

* 공정한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은 자조, 자립, 자율을 지향하는 민간의 경제조직으로 정부가 별도의 지원제도나 육성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는 없음
-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일반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협동조합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장벽이 존재할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나감으로서 협동조합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됨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특별한 지원 · 육성정책 NO!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 YES!”

* 공정한 생태계 조성

- 공동소유 및 배분체계의 제한, 공익성의 실현 등에 대한 일정한 과세혜택(스페인, 이탈리아 등) 외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동일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다만 이러한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될 때 까지 지방정부가 교육, 홍보 및 금융 등의 간접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명확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가져야”

- 협동조합은 지역복지 혁신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서 정부의 효과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협동조합 진영과 안정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여낼 수 있음

사회적기업 현황



○ “일반현황”

- 2012년 10월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699개, 예비사회적기업 약 1200개
- 전체 조직의 40%가 상법상 회사, 60%가 비영리 조직
- 기업당 유급근로자 수는 23.7명

사회적기업 현황

AK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지원 정책현황”

- 세제 혜택

- 법인세 감면(50%) 혜택
-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 적용
-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소득 10% 범위 내에서 기부금 손금산입 인정

- 경영 컨설팅

- 3년간 총 2천만원, 연간 1천만원 범위의 경영컨설팅 비용 제공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전략기획,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시 기업당 3명까지 1인당 최대 월 150만원 지원

사회적기업 현황

AK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지원 정책현황”

- 금융

- 미소금융 (100억 규모),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100억원)
- 신용보증재단 보증에 의한 대부 (약 350억 규모)

- 사회적일자리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1인당 월 903천원)와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등 최대 5년간 연차별 차등 지원

- 네트워크 구축

- 업종별, 지역별, 전국단위별 네트워크 상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사회적기업 현황

AK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지원정책현황”

- 기타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지원
-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당 최대 7000만원 까지)

사회적기업 현황

AK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현황”

- 소셜벤처 경연대회

-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시켜내기 위한 프로그램
- 고등학생도 참여 가능하며 권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단위 대회 개최
- 입상자에게 창업준비를 위한 시상금 지급과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기회가 주어짐

-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가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연간 320개 팀을 선발하고 각 팀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

사회적기업 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 광역 자치단체 별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단체들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
- 1개소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참여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축현황”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
- 광역시·도 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및 다양한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 특화지원기관 운영
- 종교계 등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프로보노의 양성을 위한 별도의 특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2012년 4개소)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방향



○ “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기조 변화 ”

- 정부의 직접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정부재정 의존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것보다 일반 영리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차별없이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여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방향전환
-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법 등 각종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공공조달과 금융지원 체계를 재정비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하였음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방향



○ “ 유사사업 통합지원체계 및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되었던 유사 지원사업(자활지원,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큰 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통합하고 각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원의 중간지원체계(권역별 지원기관)를 통합운영하게 되었음
-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확대(지역사회 기여형 신설)하고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정부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연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법인격 보장”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선택가능한 법인격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였음
- 이로 인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협동조합간 연합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들이 사업연합을 통해 자립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환경이 조성되었음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방향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시민사회단체의 주도 하에 추진 중
- 정부, 종교계, NGO, NPO, 봉사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와 광역시·도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네트워크 및 10여 개 광역시·도 네트워크가 출범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 중

사회적경제 관점의 부각과 정책적 과제



○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 변화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가 다양한 시행착오 및 연구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도출
- 2011년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었음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그로 인한 성장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기업에게 안정적인 법인격을 제공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내는 효과가 발생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발시켜 낼 것임
- 또한 전국 단위의 민관협력체계가 확장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환경은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

사회적경제 관점의 부각과 정책적 과제



○ 사회적경제 관점의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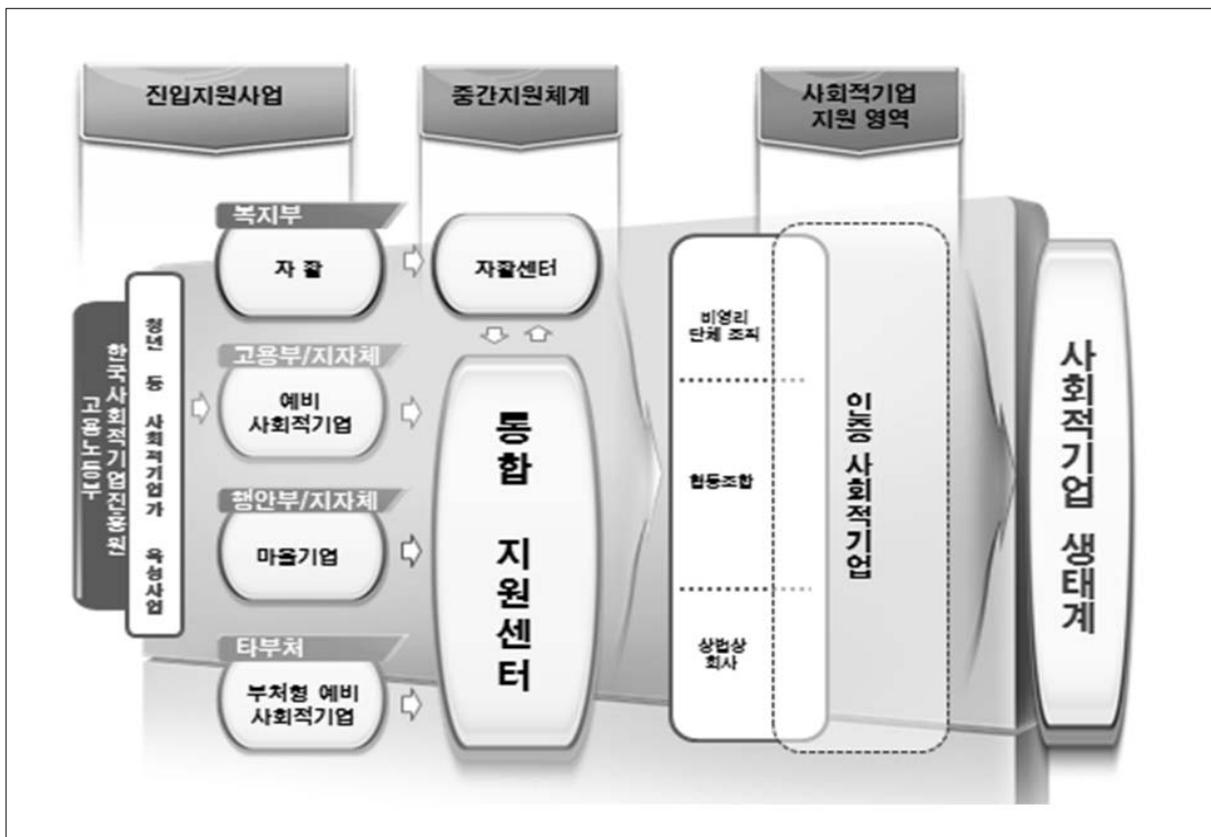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증진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안정적인 법인격이 생겨남으로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안적 아젠더로 급부상
- 법인격에 대한 보장으로써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정책을 담아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상호보완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안정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

사회적경제 관점의 부각과 정책적 과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공공 및 민간의 정책적 과제

-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
-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방안 모색해야
-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민간의 네트워크 및 연대협력체계 재구성



토 론 문

강 순 원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무이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

<발제에 대한 질문>

1. 협동조합 방식의 소자본 공동창업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창업자에 비하여 창업성공율이 높아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 발생/해외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 창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부대효과가 발생/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있어 상당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구체적 사례와 통계 등을 적시해 주셨으면 함

2. 우리 사회가 일반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협동조합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장벽이 존재할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나감으로서 협동조합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됨

=> 협동조합의 시장진입 장벽 요소들은?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것보다 일반 영리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차별없이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여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방향전환

=> 바람직한 제도환경 개선과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방향은?

<제안>

1. 최혁진본부장님 발제 중

- 협동조합은 지역복지 혁신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서 정부의 효과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고,
- 이를 위해 협동조합 진영과 안정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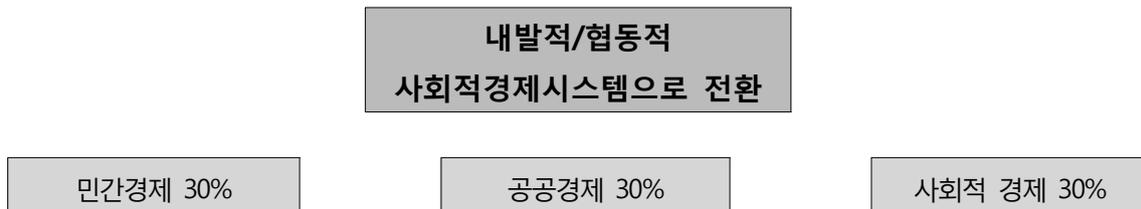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여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음

2. 제주의 현 주소

- 제주의 화두는 국제자유도시이고, 이는 중앙정부와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한 외발적 발전전략임
- 외지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은 수직적 외지자본·중앙정부 의존과 주민소외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내생적 경제생태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2011년 한국 국민소득 2만3000불 목표, 제주 2010년 잠정추계 1만6316불 전국 평균수준 80%대 이하 추락은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임

3. 제안 : 사회적경제 시범도로의 전략적 접근 필요

- 향후 사회는 수평적 소통과 연대, 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임
- 열악한 도내중소기업의 새로운 출구 모색,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
-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점으로서 사회적경제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연구 실천하는 도시로 육성



-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구성 및 사회적 경제 헌장 제정
 - 지역재생을 위한 노사민정 거버넌스 ‘퀘벡의 경제, 사회 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등과 같은 사회적 관심과 미래에 대한 공유, 실행 필요
-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본 접근성을 강화하고 성장 발전 단계에 조응한 투·융자 방식의 사회투자 전문 금융기능 필요
 -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등의 주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는 금고, 기금 등 금융기능의 역할이며, 2012년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이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회목적에 투자하기 위한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켰음

- 사회적경제 시장구축 지원과 이를 위한 교육, 연구, 집행기능 확충
 - 공공부문 최적가치낙찰제, 사회책임조달, 공공시장 중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개발센터 확대 등의 요구에도 주목해야 함
- 공공재산의 사회적경제 투자 활용 촉진
 - 구제주대병원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공간으로 확대하거나, 특히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안(강릉의 커뮤니티빌딩, 은평구의 소방서 커뮤니티공간 활용 예도 참고)

토론문

제주의 사회적기업 어디까지 왔나?

이영호(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장)

[유]클린서비스보급자리는 ?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목적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좋은 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

사회적기업은 우리사회의 빈 곳을 채움으로써
세상을 기분 좋게 하는 기업

함께 만드는 내일, 세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이 사회적기업 (유)클린서비스보급자리입니다

제주사회적기업 현황

일반현황

- 2012년 9월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16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41개 총 57개 기업이 존재

출처 : 제주도 집계

- 2012년 5월말 현재 사회적일자리 413개,
전문인력 33개 창출
- 30억 8천만원 예산지원 (국비, 지방비 포함)

출처 : 고승한박사 발표 중

3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기업 현황

일반현황 변화

- 2009년 8개 사회적기업에서 2012년 9월 57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으로 양적 성장
- 2009년 173명 고용에서 2012년 5월 446명 고용

출처 : 고승한박사 발표 중

-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30개, 예비사회적기업 70개
- 취약계층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

4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기업 과제

기업적 측면

- 제주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자본
- 불안정한 경영구조와 전문성의 부족
- 시장경쟁력 확보와 판로개척

5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기업 과제

사회가치적 측면

- 취약계층고용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수준
-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부족
- 사회적기업 가치 향상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부족

6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 전망

- ... 제2차 5개년 계획기간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백가쟁명하는 시기를 맞이할 것임.
- 향후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하지만 좀 더 설립이 쉽고 사업 전환이 빠르며 의사결정이 신속한 비영리 기업의 역할이 주도적일 것으로 예상함.

출처 : 김혜원교수 사회적기업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언 중

7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도적 측면

- 제주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의 개정. 특히 우선구매와 관련된 항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최소한 주무부서인 지식경제국 내에 사회적경제과 신설이 요구됨.
- 제주도 당국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파트너십 관점에서 정책협약이 제도할 될 필요가 있음.

8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사회적경제 영역

- 협동조합법의 시행은 기초적인 토대에 불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함.
- 비록 협동조합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사회적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더욱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고용 또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제주지역에 사회적기업의 존재 이유를 보다 명확히 보여 줄 필요가 있음.

9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 꿈

-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특별함이 있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느낄 수 있다는 특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당국과 도의회, 제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단체와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낸다면 그 어느 지역 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10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Ⅱ 세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협동조합기본법”

좌 장 / **김영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 표 / **박창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지정토론 / **오태문**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강종우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실장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협동조합기본법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
박창환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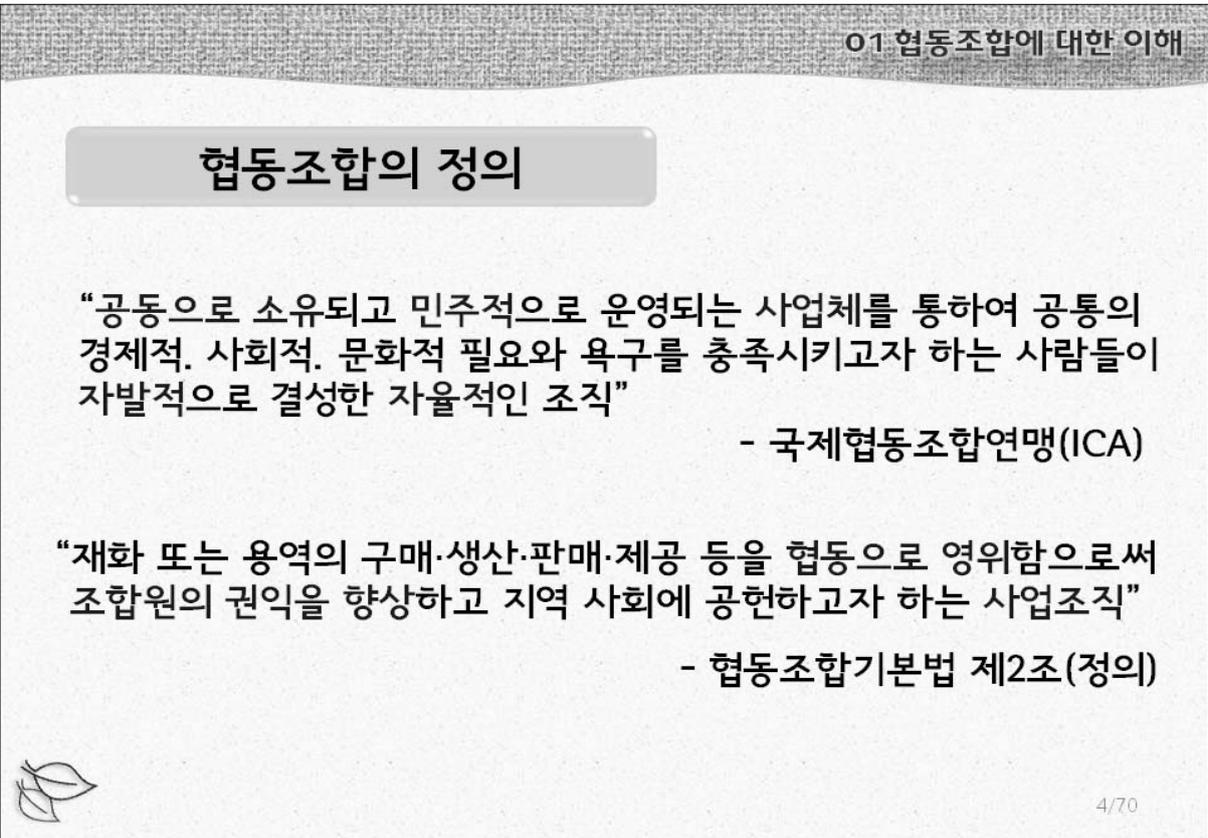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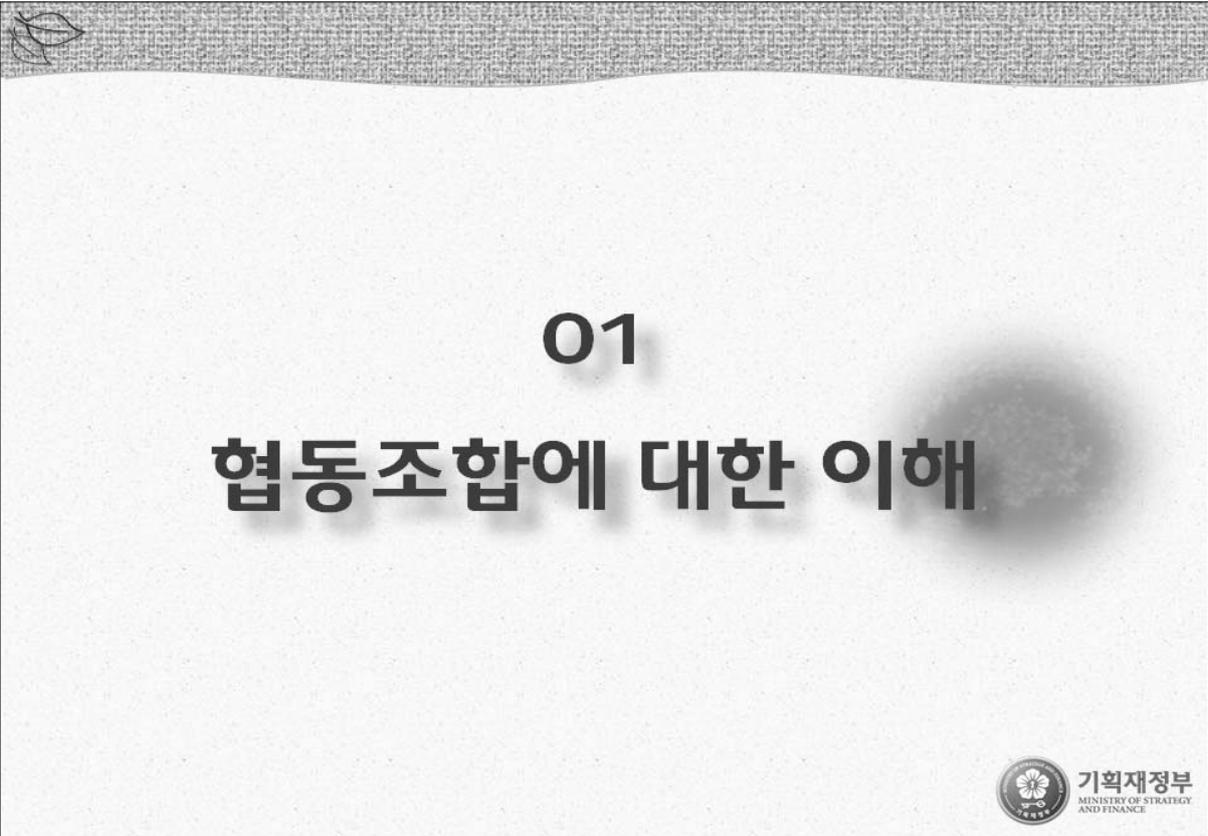
2012. 11. 10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목 차

- |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 | 02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
 - 1) 법 주요내용
 -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3) 법 시행시 기대효과
- | 03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 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 2) 협동조합의 활용방안
- | 04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개발 전략
- | 05 향후 정책 방향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개념

1. 법인격 :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2.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1표
3. 책 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4. 가 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5. 배 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6. 경 영 : 원가주의 경영원칙



5/70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주식회사와 사단법인과 비교

<법 제정 전>



<법 제정 후>



- 기존 법제(상법·민법) 보완/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 협동조합 지향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법인격 부재로 개인사업·주식회사·사단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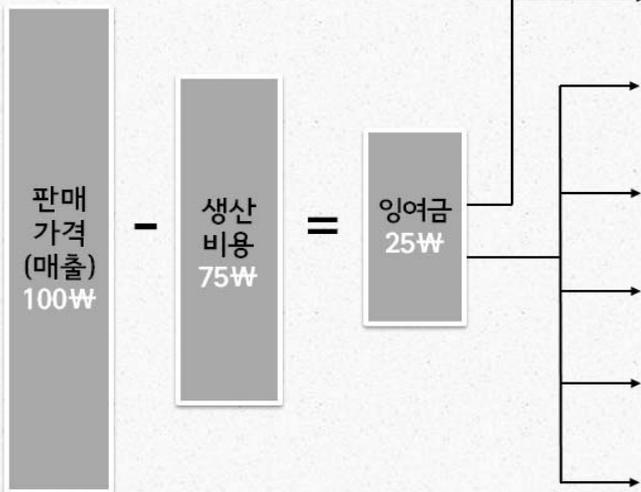


6/70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원리

※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 등)>에서 일부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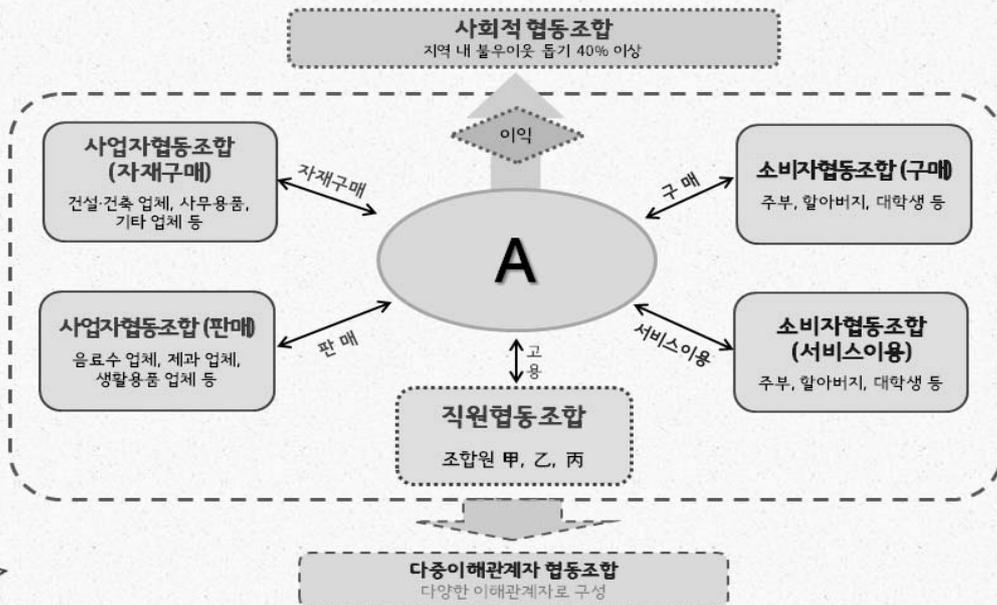


-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 사회적 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 소비자 협동조합
판매가격 인하
- 사업자 협동조합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 직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생산자-소비자)

7/70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유형



8/70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협동조합은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기업" 모델입니다.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지금 이순간도 "협동조합"은
매우 경쟁력 있는 기업모델입니다.

수익이 나오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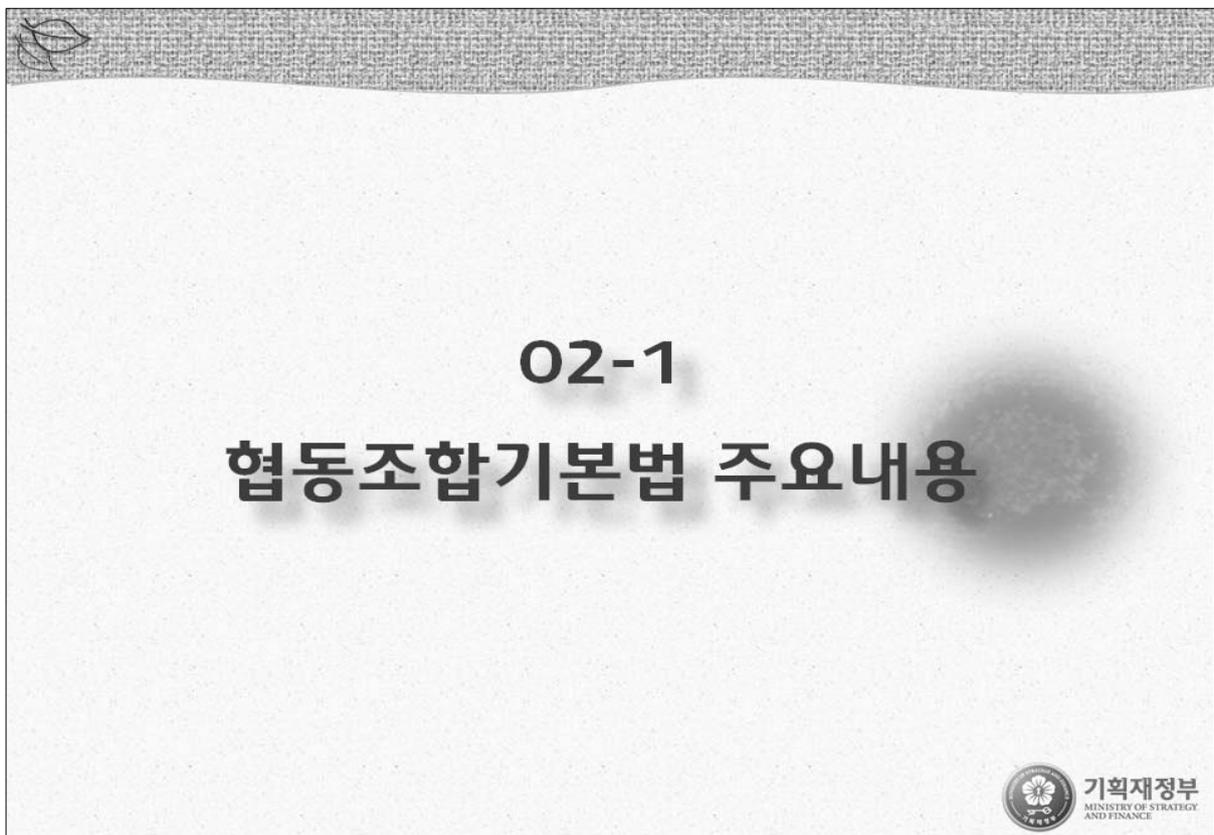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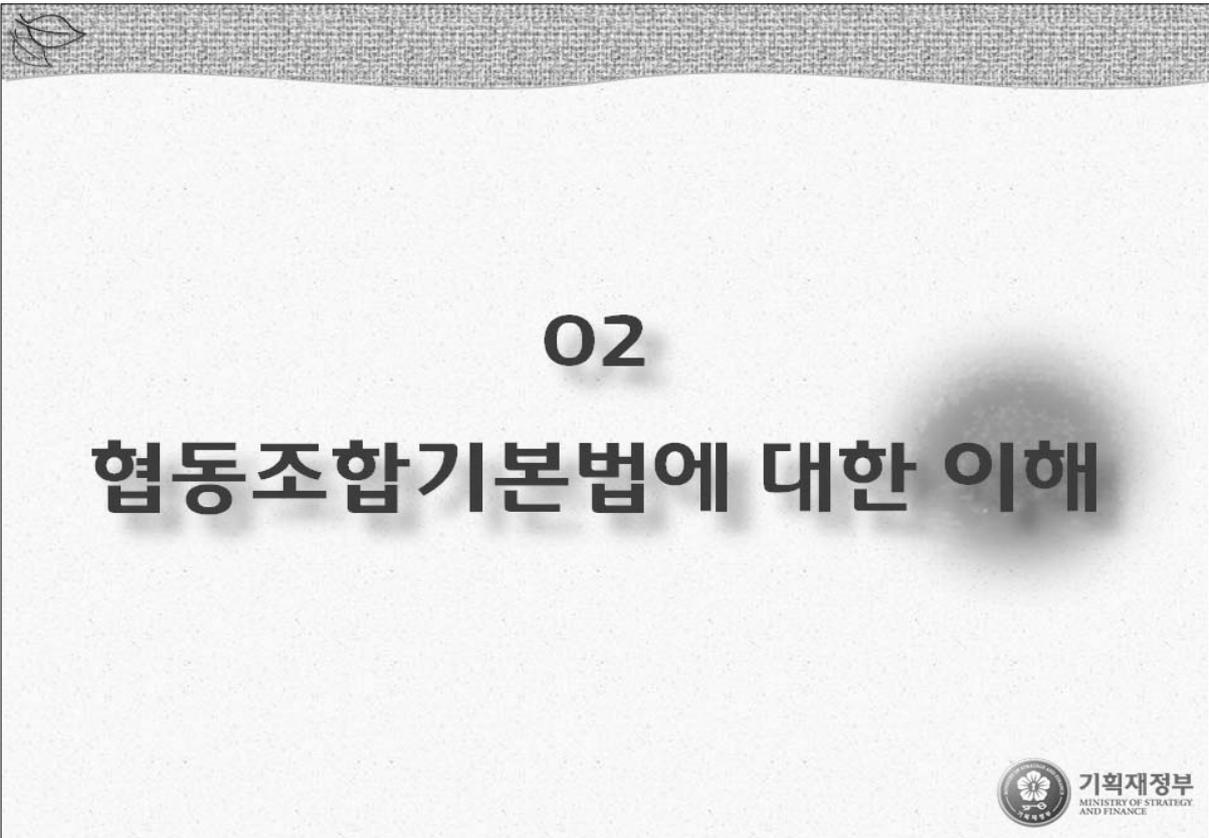
The co-operative



Rabobank



MIGROS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기본법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규정
- 기존 특별법 형태의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총 7장 119조 제정 (총칙,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13/70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① 새로운 「법인격」 도입

- 법인격 부여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층구조(2층)”의 법인격 도입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14/70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협동 조합	사회적협동 조합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 배당 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15/70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②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
- 각 부처 :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
- 시·도 :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 담당

16/70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감독, 과태료 징수 등



- 실태조사 자료 제출, 정책협의회 참여
-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위임 권한 수행 (설립·합병·분할 등 인가, 감독, 청문 등)

- 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리, 과태료 징수 등 (설립·합병·분할·정관변경 등)
- '협동조합의 날' 행사 및 자체 교육·홍보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③ 협동조합 정책

- 관련 정책 수립, 인가·감독 등 협의 위해 관계 기관과 정책협의 실시 (시행령에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반영)
-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등 규정



④ 타 법과의 관계

- 타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음



⑤ 공정거래법 제한적인 적용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요건 (시행령안 제5조)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⑥ 공직선거 관여 금지

- 협동조합을 이용해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당선·낙선되도록 하는 행위 금지



21/70

⑦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사회적협동조합'만이 '부수적 사업'으로 가능하며, 시행령에 소액대출 이자율 및 상호부조 총액 등 규정

- (이자율 최고한도)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참작·재정부장관이 고시
- (소액대출 한도) 출자금의 2/3 내에서 조합원당 대출 한도 정관에 규정
- (상호부조 한도) 출자금 총액 내에서 조합원당 한도 및 요건 정관에 규정



22/70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⑧ 시행시기

- 2012년 12월 1일 시행



23/70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시행령

-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 기타 실무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 규정
- 총 18조로 구성

시행규칙

- 인가기준·서식(설립신고서, 설립인가증 등) 규정
- 입법예고 (9.14~10.9일) 후 법제처 심사 중



25/70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①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 관련사항 등 심의
- ▶ 재정부 : 총괄·조정 & 각 부처 : 인가·감독
- ▶ 위원장(재정부차관)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매월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조정 가능)
- (위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기청, 산림청, 민간전문가 등



26/70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② 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

- ▶ 직원·소규모협동조합 : 직원의 임원 전원 겸직 허용
- ▶ 사회적협동조합 : 임원의 3분의 1 겸직 허용

협동조합 유형	임직원 겸직 허용 이유
▪ 직원협동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직원=조합원이므로 임원(조합원)과 직원(조합원)간 이익충돌 우려가 없음
▪ 소규모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소규모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겸직 불가피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공익실현)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직원 등)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27/70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③ 운영의 공개

-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사항 규정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시 기한
공통사항	1. 사업계획서 2. 결산서 3.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적 4. 총회 등 조합원 활동	좌 동	결산 후 3개월 내
추가사항	-	1. 수지예산서 2. 사업결과보고서 3. 정관, 운영규약, 운영규정 4.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5. 감독사항 및 그 조치 결과	



28/70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

- ▶ 5가지 주 사업 유형별로
사업비 또는 고용 비율로 40% 판단기준 산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요건 : 40% 이상 공익목적의 사업(주 사업) 수행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유형	용어 정의	주 사업 40% 판단기준
① 지역사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공헌) 지역 자원 활용,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 	-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대상 인원, 시간, 횟수(%)
② 취약계층 배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갱생보호 대상자 등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 보육, 예술, 관광, 간병, 문화재 보존, 청소 서비스 등 	- 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 전체 인건비 중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 비중(%)
③ 위탁사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의로 수행 	- 전체 사업비 중 위탁사업비 비중(%)
④ 기타 공익증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공익증진 사업 	-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대상 인원, 시간, 횟수(%)
⑤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①+②+③+④의 혼합 	- ①+②+③+④ (%)



⑤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요건

▶ 타 사업보다 강화된 요건, 규정된 비조합원에게만 서비스 가능

- (설립요건)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 (비조합원의 이용범위)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사업구역 내 주민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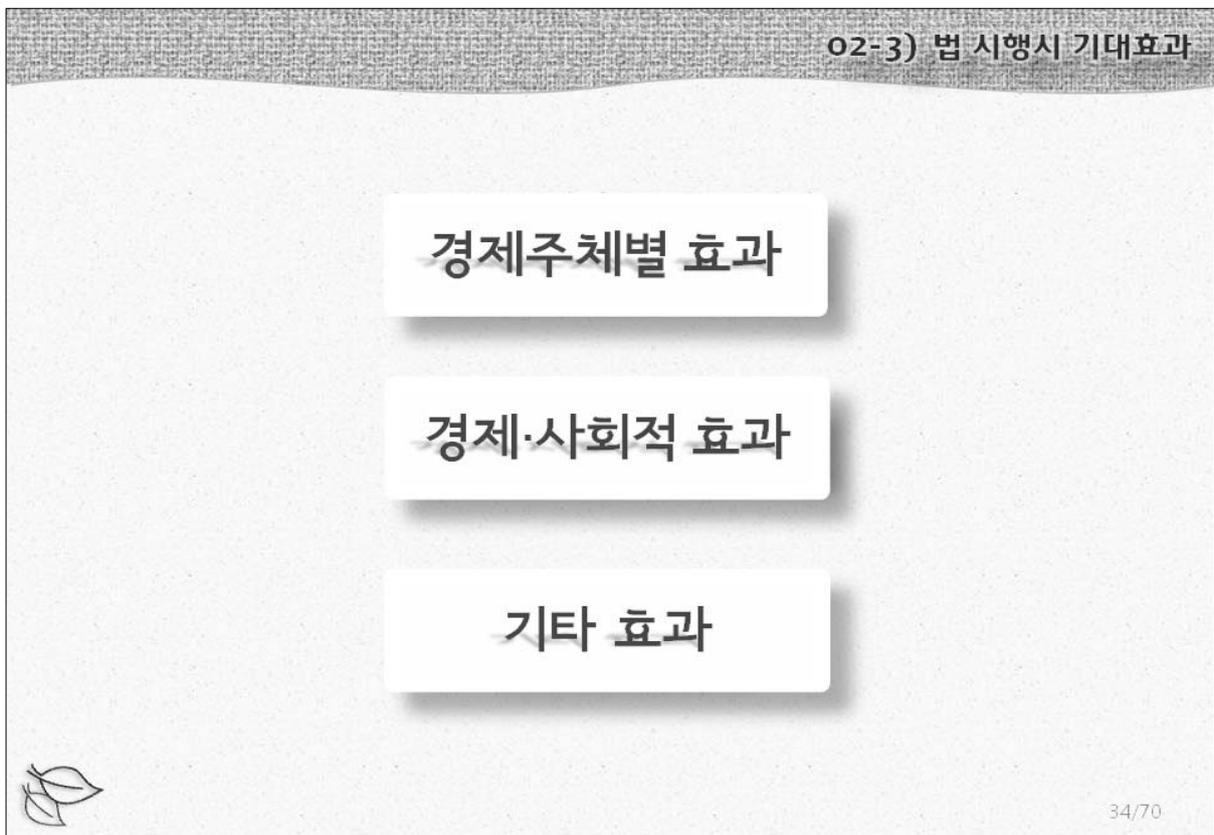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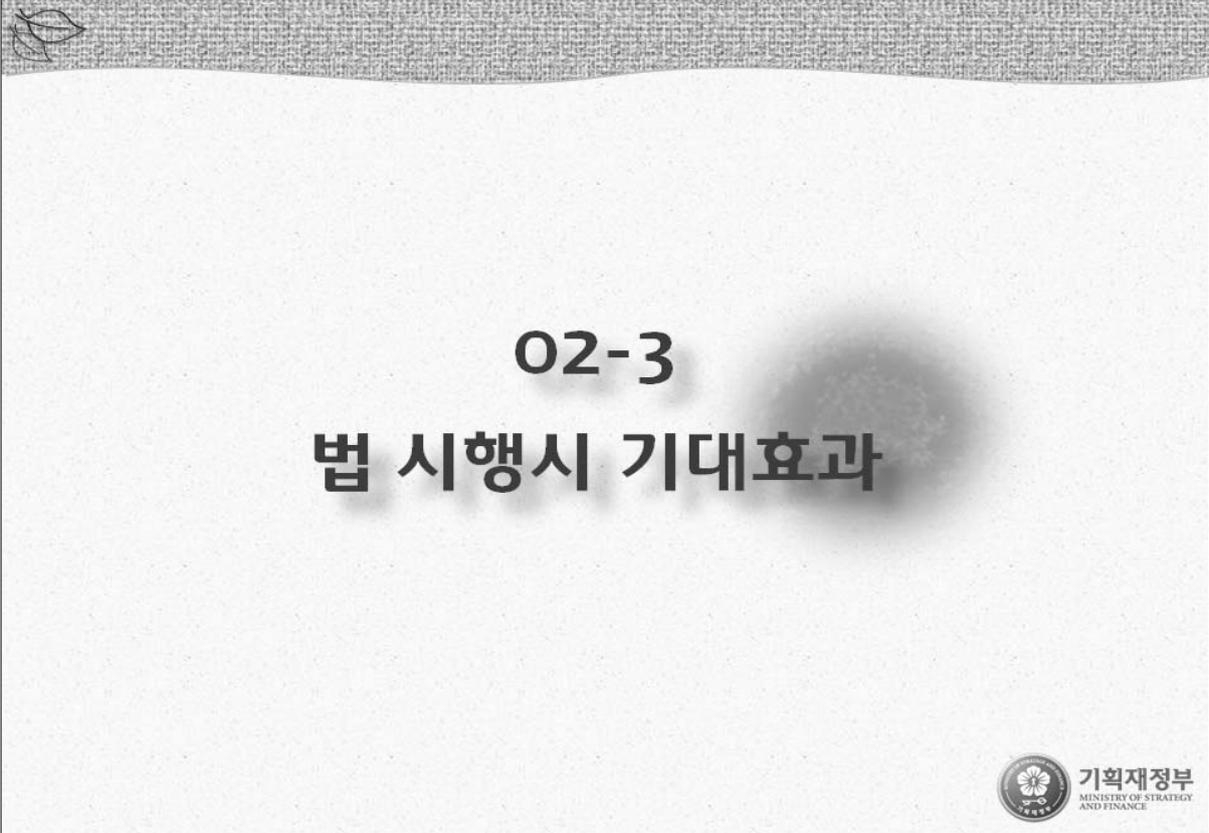
개선사항 :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하여 설립요건 등 강화



기획재정부 고시사항

- 소액대출 최고이자율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후원자의 요건 및 범위
- 의료기관 개설의 추가적 인가기준 및 절차
-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

-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가능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 재배 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근로자

- 직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 가능



35/70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경제·사회적 효과

경제적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사회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복지시스템 보완 및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36/70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기타 효과

기 타

- 의사 결정의 조합원 참여 보장
-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olleh~



37/70



03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03-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03-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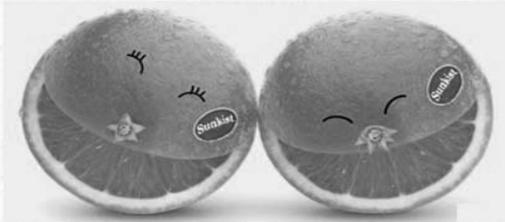
- 명 칭 : 축구 협동조합 (FC바르셀로나 협동조합)
- 개 요 : 축구팬들이 출자하여 스스로 운영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
최근 문화적, 자선적 단체 설립
- 특 징 : 구단 수입의 0.7%를 유니세프에 지원 등 활동



03-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썬키스트

- 명 칭 : 썬키스트
- 조합원 :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
- 기 능 : 천 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 특 징 :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



41/70

03-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웰치스

- 개 요 : 포도 재배 농가(전미포도협동조합연합회)들이 지배권을 가진 협동조합 소유의 주식회사
- 장 점 : 협동조합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취해 시장에 응할 수 있다는 것
- 성 과 : 웰치스의 사례는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협동조합의 목적을 위해 주식회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42/70

03-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성미산 마을공동체

- 명 칭 : 성미산 마을공동체
- 설 립 : 1994년, 공동육아 모임으로 시작
- 기 능 : 공동육아, 마을극장, 성미산학교, 문화활동
- 조합원 : 성미산 인근 주민



43/70

03-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중곡 제일시장 협동조합

- 명 칭 : 상인회 대신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
- 설 립 : 2003년 협동조합 설립
- 내 용 : 세무, 법무컨설팅, 공동브랜드 출시(월 조합비 납부)
- 목 표 : 상가건물 매입 추진(세입자에서 건물주로)
- 성 과 : 시장번영, 권리금 상승



03-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여행 협동조합

- 명 칭 : 여행협동조합 MAP (트래블러스맵)
- 설 립 : 2009년
- 기 능 : 서울, 태백 등 30여 가지 국내여행, 10여가지 해외여행
- 특 징 : 사회적기업, 대안학교 운영 등



45/70

03-2

협동조합의 활용방안

03-2) 협동조합 활용방안

1 **마을공동체**
-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재생개발

2 **영세 소상공인 협동조합**
- SSM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3 **문화·예술·스포츠 협동조합**
- 참여형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4 **주택·에너지 SOC협동조합**
- 공공재 공급 다변화·선진화

5 **청년 등 소자본·소규모 창업협동조합**
- 청년·벤처창업 등을 통한 기술혁신 활성화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
- 스테파노 자마니 -

47/70

03-2) 협동조합 활용방안

한국의 협동조합을 상상하다

- 1 인구 10만 명마다 빵집 협동조합
- 2 협동조합 치킨집의 경쟁력
- 3 도시를 바꾸는 아파트 협동조합
- 4 출판인의 노동자 협동조합
- 5 이동통신 소비자 협동조합의 힘
- 6 마을버스는 협동조합 사업
- 7 웨딩 사업이 대학생 협동조합?
- 8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 9 대안학교, 그리고 농촌학원
- 10 과수원과 귀농 협동조합

※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 등)>에서 발췌

48/70

03-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1 - 빵집협동조합

-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 가맹점주가 구매전담 협동조합 별도 설립
 -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당한 몫만
- 구매 단가를 떨어뜨려 거품 걷어내고 돈이 새나가는 구멍 막을 수 있음
- 여러 도시의 협동조합이 모여 전국빵집협동조합연합회 조직 가능
- 지역의 동네 가게 주인이 조합원이 되어 바가지 없는 식재료 공급으로 수익성 UP ↑



행복한상상2 - 치킨집협동조합

- 미국의 버거킹, 맥도날드, KFC, 던킨도너츠 모두 구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
- 구매전담 협동조합을 운영한 뒤로 가맹점의 수입은 늘고, 본사는 신뢰를 얻음
- 특히 취급품목이 단순할수록, 공동구매 곧 협동의 힘 극대화 가능
- 즉, 치킨집이 딱 맞는 협동조합 사업
 - 지역 도계장에서 닭 공급
 - 가까운 농협이나 농촌에서 소스 재료 공급 등



49/70

03-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3 - 아파트협동조합

- 아파트공간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
- 아파트 내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 어르신 협동조합 : 자투리 텃밭 이용, 유기농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택배 협동조합: 동네 어르신이 직접 배달, 택배 회사는 추가 비용없이 고객 만족 ↑ 가능
 - 그 외 부녀회 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폭탄급 위력의 아파트 협동조합



행복한상상4 - 출판인협동조합

- 10명의 출판인이 모여 출판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 모두 1,000만원씩 똑같은 금액 출자
 - 공동으로 사무실 마련
 - 서점 유통 전담 직원 채용
 - 출판사 공동의 브랜드 개발하되 각자 출판한 책에는 종전의 브랜드 유지
- 출판처럼 동질성이 높은 지식 산업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적합 (예: 건축노동자, 설계사, 박물관 큐레이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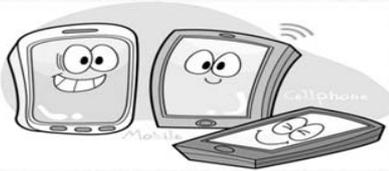


50/70

03-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5
- 이동통신소비자협동조합

- 이미 전국에서 이동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만들려는 움직임 활발
- 문제의식
 - 1) 단말기 가격,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쌌
 - 2) 소비자가 거대 기업과 1:1 계약하는 상황
- 대안으로서의 이동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 직접 통신 사업에 뛰어들어 요금 인하 및 20만원대의 단말기 개발하도록 제조 회사 압박



51/70

행복한상상6
- 마을버스 협동조합

- 現 마을버스 사업은 독점적으로 운영됨
- 신설하는 마을 버스 사업기회를 1차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여
- 버스 사업자 한 사람이 챙겨가던 목돈을 주민에게 고루 나누고, 연말 잉여금 발생시 조합원에게 배당(마을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음



03-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7
- 대학생 웨딩사업 협동조합

- 상조 사업과 비슷하게 서비스 가격이 독점적, 가격정보의 비대칭 극심
- 조합원은 상조회비 내듯이 결혼 때까지 조합비를 내고, 결혼과 동시에 자동 탈퇴
- 촬영/드레스 대여 같은 부대 사업으로 시작 후 조합원 증가하면 직접 예식 공간 임대/인수 가능
- 바가지 가격 없앨 수 있음



행복한상상8
-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 스위스의 거대 소비자 협동조합 '미그로' 역시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
-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다수가 사회적기업
- 프랜차이즈 기업 해피브릿지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 예정
- 실질적인 노동자 자주 기업, 직원 63명 중 20명이 주주, 지분도 넓게 분산

MIGROS



52/70

03-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9
- 대안학교와 농촌학원

- 프랑스의 경우, 협동조합 학교가 5만개 협동조합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450만 명
- 대안학교가 협동조합이 되면,
 - 재산의 사유화 위험 사라짐
 -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 없앨 수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시, 기부금 받을 수 있음
- 농촌의 사교육 부족 문제 해결 위해, 협동조합 학원 운영
 - 학부모로부터 출자, 지역 내 유휴 공간 사용
 - 강사로 그 지역 출신자 또는 대학생 고용
 - 컴퓨터 등은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



행복한상상10
- 과수원과 귀농 협동조합

- '1인 1헥타르 과수원' 갖기 사업
 - 은퇴를 앞둔 100명의 도시인 모집
 - 100헥타르 야산을 개간, 각자 1헥타르씩 분양
 - 영농조합 법인격 취득시, 각종 세제 지원 혜택 유
- 이 100명의 귀농 예정자가 모여 과수원 사업자 협동조합 설립
- 충남 공주의 '마곡사람들'
 - 협동조합 방식의 생태마을
 - 장기 임대 형식으로 사찰 땅 빌림
 - 귀농자들이 모여 흠집 짓고, 유기 농사하며 생태공동체를 형성
 - 수천만원의 건축 비용은 출자금으로 납입



53/70

04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개발 전략

04 지역개발 전략

Best Model



“오늘날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은 250여개가 넘는 업체가 있으며 하나의 커다란 우산 아래 모두가 모여 있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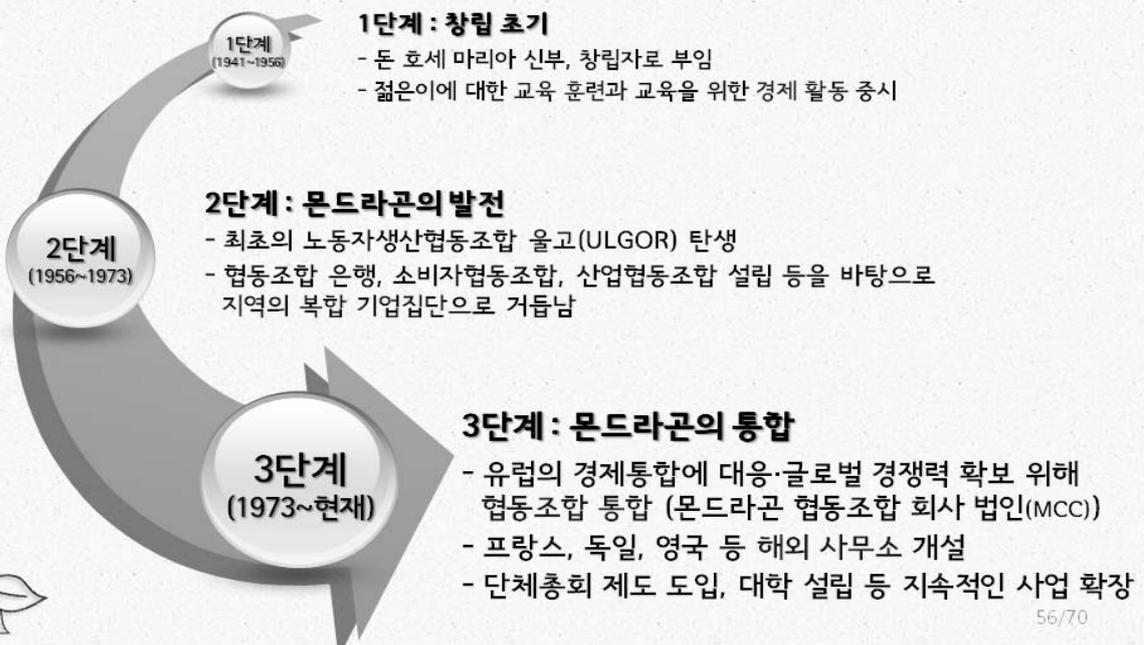
어떤 업체도 부도가 나거나 정규직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없었고,

대부분의 다른 대기업체들과 달리 대도시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각 업체들은 그 지방의 지역사회에 산재해 건설하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04 지역개발 전략

1. 역사적 전개



2. 초기 성공의 이유

외적요소

- 훌륭한 지도자 -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카리스마
- 기업 설립이 용이했던 시기

내적요소

- 설립자들의 강한 책임감 및 윤리 의식
- 개인의 발전 도모 (부유한 개인이 아닌 자기계발 기회 증가)
- 혁신적 구조 (상호 지원, 내부 협동 등)



57/70

3. 몬드라곤의 10가지 교훈

교훈

- 1 지역화 : 지역화에 기반한 수평적인 통합
- 2 연대 : 개인 간의 연대, 사업체 간의 연대
- 3 보충성 : 최하급 단위에서의 의사 결정
- 4 사업체의 통합 운영 원칙 : 서로 통합하여 운영
- 5 일체화된 경영 : 숙련된 관리자의 양성



58/70

3. 몬드라곤의 10가지 교훈

교훈

- 6 금융 : 지역 경제에 기반한 금융, 지역투자 협동조합
- 7 연구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연구센터
- 8 기술 : 하나의 상위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 개발
- 9 정부 : 지역 공동체와 가장 가까운 조직(지방정부)
- 10 리더십 : 지도자로서의 잠재력 가진 사람 발굴

59/70

05

향후 정책 방향

05 향후 정책 방향

원칙

직접적·재정적 지원보다는
제도적·간접적 지원을 통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이를 위해

교육·홍보

차별적 개선

기존 정책과
융화

네트워크 구축



61/70

05 향후 정책 방향

교육·홍보

구체적 활용방안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설립 활성화 유도하고 한국의 대표 협동조합 모델 발굴

<교육·홍보 계획(안)>

- (교육) 협동조합업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인가 처리, 감독 등 실무교육 - 전국 4~5개 권역별로 각 1회씩 '업무지침' 등 교육(10월말~11월말)
- (홍보) '설립·운영가이드북' 마련 및 배포(11월) 이후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실시 - 협동조합 사이버홍보게시판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보급(11월)
- (기타) 외부기관 주최 강연, 세미나, 인터뷰 등에 적극 참여하여 법시행의 기대효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홍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10.16일, 대구) 등



62/70

05 향후 정책 방향



교육 계획(안) - 협동조합 설립희망 일반인 교육

- (대상)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일반인
- (내용)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의 설립·전환 촉진 및 활성화
- (교육프로그램)

시간	강의 내용	강사
13:00 ~ 13:30	협동조합의 의의 및 정책방향	박창환 과장 (기획재정부)
13:40 ~ 14:50	국내외 우수 운영 모델	김기태 소장 (협동조합연구소)
15:00 ~ 15:5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의 이해	최혁진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00 ~ 16:50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양동수 변호사 (재)동천



63/70

05 향후 정책 방향



교육 계획(안) - 협동조합 설립희망 일반인 교육

- (교육일정 및 장소) 4개 권역으로 구분 실시

구분	일자	권역	교육 지역(장소)
1차	2012.11.14.(수) (13:00 ~ 17:00)	대전/세종/충청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2차	2012.11.16.(금) (13:00 ~ 17:00)	서울/경기/ 강원/인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
3차	2012.11.19.(월) (13:00 ~ 17:00)	광주/전라/제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4차	2012.11.21.(수) (13:00 ~ 17:00)	부산/대구/ 울산/경상	대구 (EXCO 국제회의실)
5차 (잠정)	2012.11.23(금)	협동조합 설립 이해관계자 교육 ※ 수요조사후 실시여부 및 2차 통합교육 여부 결정	



64/70

05 향후 정책 방향

차별적
개선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단단한 협동조합의 토양 마련

3. 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3-1	과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재정부, 행안부
3-2	업력 및 각종 인·허가 승계	전부처
3-3	기타 정책 지원 자격 또는 권리 유지	전부처

4.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활성화 과제 (예시)

4-1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행안부
4-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중기청
4-3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복지부
4-4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가능성 검토	고용부

65/70



05 향후 정책 방향

기존 정책과
융화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예 :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지원사업>

- (내용)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기반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시 공동협업화 지원
- (규모) '13년 예산 307억원 기반영, 3년('13년~'15년)간 총 20,000명 지원

대상사업	지원한도
공동판매장, 공동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5천만원 (80%이내)

66/70





협동조합간의 협동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의식 강화
(예: 기존의 신용협동조합 이용 활성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6대원칙(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협동조합의 기적’을 ...



그러나 조금해 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더 나은 세상(a BETTER world)을 향한
협동조합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6

질의와 답변 (Q & A)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ank you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토 론 문

법 시행에 따른 도의 준비계획 및 애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오 태 문

□ 법 시행에 따른 준비계획

- (도의 역할)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신고 업무 및 과태료 부과 등 감독 업무 수행
- (협동조합 설립요건 및 절차) 발기인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조합원 등 12가지 필수항목 기재)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도지사) → 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납입(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도내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예시)

유형	분야	세부 사업	비 고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보훈·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협동조합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등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문화교실, 종교 등	
	관광	여행업, 관광안내원 등	
	기타	소비자단체, 공동주택, 환경 등	

○ (준비 절차)

- 협동조합 소관부서별 업무역할 분담 및 담당공무원 교육(11월중)
- 협동조합설립 안내 창구 개설(경제정책과내)
- 협동조합 설립희망 일반인 대상 교육 지속적 실시(12월부터)
- 전담조직 및 인력충원 요구(12월중)
- 협동조합 설립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컨설팅기관 선정(12월중)
-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13년 3월중)

□ 추진상의 애로사항

○ 시도별 협동조합에 대한 신고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 구축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협동조합관리 전담조직의 설치·인력배치·업무조정과 협동조합업무전담조직 인력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인건비, 기준인력) 초과 운영 허용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조정하여 조직 충원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5급 1, 6급이하 5), 인천시(5급1, 6급이하2)를 제외하고 전담조직 미설치

-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의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협동조합 지원조례」 표준 준칙(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협동조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등록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협동조합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담당 공무원교육이 협동조합 총괄부서(경제정책부서) 위주로 교육이 진행됨으로서 지자체의 부서별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기회가 없어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 불편 초래 예상

- 협동조합의 유형이 다양성으로 업무영역이 광범위하여 총괄 부서에서 일괄처리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총괄부서이외의 부서별 담당공무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대응능력 제고 필요.
- 우리 도에서는 협동조합업무를 총괄·조정부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되 조합의 유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에 의한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분야 협동조합 사무처리 담당 예정

- 협동조합업무가 시행초기라서 협동조합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경영인 양성 교육, 전문컨설팅기관 육성 필요
 - 협동조합설립희망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순회 교육 강화 필요
 - 협동조합 전문교육, 설립신고에 따른 제반절차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기관 지정하여 지자체의 업무 경감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2항에 의거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및 협동조합의 지원근거로 압력단체화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가중 우려
 - 인건비·운영비 등 직접지원은 지양하고 교육·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적기업 등 형평성을 고려 지원요청 시 지방재정 부담 우려
 - 협동조합 설립·전환 수요단체 전수조사와 전산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

토 론 문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과제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실장

강 종 우

1. 논의에 앞서

- 요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역사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경제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음
 -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12월 시행에 따라 자유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며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제주지역의 활동가들도 다양한 분야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구축하고자 올 11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준)를 조직하였음
-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정에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모두 다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지역차원에서 우려의 지점도 존재하고 있는 게 솔직한 심정
 - 한국에서, 더구나 제주지역은 더더욱 협동이 추상적 구호로 머물러 있고, 생활 속에서 협동과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와 교육의 현실을 보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서 한 경제주체로 자리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임
 - 특히 협동적 가치인 자율과 자치, 민주적 운영방식 등 협동적 원리와 이념을 일상의 삶에서 어느 만큼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여전히 못 미치는 한계가 있음
- 최근 협동조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 육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함

2.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흐름-사회적 기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복지정책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한 참여정부는 사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연장선상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구상하였음
 - 즉,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제공하던 사회 및 복지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면 효율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관심사였던 이명박 정부 또한 참여정부가 처음 시작한 사회적기업 정책을 이어받았으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거나 NGO 자체가 기업의 영리추구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적 자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식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강조하여 지원기간 내에 시장 내에서의 자립을 전제로 하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정책 중에 참여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었음
 - 제주에서도 현재 사회적기업 15개, 예비사회적기업 40여개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며, 나름의 성과와 폐해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
 - 초기에 대책 없는 참여자의 인건비 지원, 재정 자립의 엄격한 요구, 넘쳐나는 행정 규제 등으로 급격하게 요동치게 된 사회적기업의 전개과정은 한국사회가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자산, 즉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었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주춤하게 만들고 있음

- 하지만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사회적기업가와 활동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 ①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바람직한 것인가?
 - ②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
 - ③ 사회적기업에 의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가?
 - ④ 사회적기업에 의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음
- 이러한 고민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태동 자체가 IMF이후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진행된 양극화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장자본주의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 즉 대안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임

3.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역할

- 시장자본주의에서 협동조합은 효율이 낮고 시장 적응이 어려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기업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적기업가들은 사회적경제를 접하고 협동조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한 때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노동운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 일제가 가로막았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같은 이유로 발전하지 못했음
 - 농협의 경우 미군정하에서 농정의 대리집행자로서 필요성 때문에 관주도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 사회적 요구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개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이 조직되었음
 -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협동조합은 농협이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 제한된 분야에서 제안된 활동만을 하도록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음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경제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하부조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협동조합 원리에 담겨져 있음

-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민주적 관리의 원칙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 ④ 자율과 독립의 원칙 ⑤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의 원칙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원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운동이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줌
- 소비자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스위스, 협동조합의 연대조직을 만들어낸 이탈리아 로마냐 지역, 그리고 스페인 몬드라곤과 캐나다의 퀘벡의 사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였음
- 또한 지역의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해주기에 충분하였음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과제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이후 육성법이 아닌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비슷한 경로를 겪게 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
 -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드는데 성급하여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곤 함
 - 사회적기업 정책도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음
 - 법의 제정만으로도 협동조합운동이 크게 발전할 것처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농협 등 생산자협동조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도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의존 그리고 정부의 주도로 인해 협동조합의 자율성, 자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섬
-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협동조합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할만한 생태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존재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것임
 - 이는 협동조합의 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다양한 시도 또한 무력화할 것이고 시장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구축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향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산을 확보하는 노력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첫째,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적 이해가 필요

둘째, 협동과 협력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셋째, 조합원 주권의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넷째,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 블록을 형성해야

- 개별법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지역화를 유도하는 것
-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제도적 영역에 있는 사업체를 사회적경제 영역 하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
- 시민출자기업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
- 작은 규모의 사업을 연대한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사례를 만드는 것

다섯째, 지역차원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정책적 근거를 확보해야(조례와 중간지원조직 등)

6. 마치며

- 지역에서 시장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자립과 순환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바로 사회적경제임
 - 하지만 민간영역에서 사회적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정부주도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경험하였음
- 현재의 협동조합 육성 정책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 목표가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즉,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사회적 자산으로서 혹은 사회적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발전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대안적 실천을 위한 제주메모

- 살림의 문화! 생태적 복지공동체를 향하여
- '수놓음'(협동적 자치)와 '뚫통시'(생태적 순환)의 창조적 복원을 통하여!!!
- 국가 최소한(National Minimum)+착한시장(Fair Market)+지역적정성(Local Optimum)
 - National Minimum(분배, 세금) : 사회 공공성, 보편적 복지, Universal Design, Barrier-Free City...
 - Fair Market(자본, 시장) :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착한소비, Green Tourism...
 - Local Optimum(지역, 호혜) : 지역통화, 로컬푸드, 지역재단, 공제조직, 어소시에이션, 어메니티...
-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행동계획(LAP:Local Action Plan)을 세우자!
 - 지역에서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安心, 安全, 安定
 - 지역자립...‘힐러리에게 암소를!’(미드)
- 모두를 위한 제주(Jeju for All)
 - 제주에만 가면 어린이도, 노인도, 여성도,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외국인도...
누구든지 자연과 벗하며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모색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동계획

- 사회적경제 개념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경제총량을 키우자>
 - <우애와 연대>가 숨쉬는 공간을 만들기
 -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착근할 수 있는 실천을 기획(생산과 소비, 그리고 문화)
 - 사회적경제를 구상하는 지역사회경제조직들의 협력을 도출
- <생산, 유통, 소비, 문화적 재생산>을 포함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지역행동으로 조직
 - **<건강한 먹거리>와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첫 번째 단추로 하기**
 - 먹거리를 중심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생산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 판매를 담당하는 조직(지역생협,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등)이 결합
 -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협력, 이 과정이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생각이 필요, 생산하고, 판매하고, 가치를 홍보하고, 이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분업이 필요
 -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구축된 지역적 기반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와 문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요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력하여 현재 생협이 참여하는 먹거리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이것이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제안을 하는 논거는 아래와 같음
 -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에 착근하지 않는 사회적경제 운동은 성장이 힘들며,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종속성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
 - 사회서비스부문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지역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영역과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역할을 배분할 수 있을 것임
 - 생산조합은 생산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묶어 생산 총량을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임
 - 지역생협은 유통과 판매문제에 있어 기존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조직들이 판매기반을 넓힐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시민단체는 가치를 홍보하는 뛰어난 재능을 살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자활과 사회적 기업 부문의 단체들은 생산과 판매 그리고 홍보라는 각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일환으로 활동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각 주체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은
- 협동조합운동은 그 내부로부터 membership open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임. 생산/소유에 있어 회원제를 유지하더라도, 판매를 open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자활기업과와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지역기반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인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부 록

<참고 1> 협동조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고 2> 왜 협동조합인가

<참고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1

협동조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종익(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올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어떠한 조직이고 무엇을 잘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발전 경험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적 약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신용창출 =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각종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조직적 대응 방법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자본주의 형성 및 발전 초기에 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 담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을 창출한 혁신적 형태의 기업이었고, 독과점시장구조로 거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곳에서는 독과점을 제어하는 경쟁척도(competitive yardstick)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었으며, 지역사회의 개발을 매개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창출 기업이었다.

시대적 과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할과 기대감 커져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고도성장기에 빈곤의 탈출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기위하여 설립되고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방식이 정부 주도의 자원동원 방식이었기 때문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의 주요한 집행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치중되었고, 주로 고리대 정리를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기능에 편중되어 발전되어 왔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우리나라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회경제구조를 혁신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부문 또한 새로운 역할과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구조적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일, 기업 규모 간·일자리 간·지역 간 구조적 격차와 양극화의 문제에 대처하는 일, 노령화와 기후변화 및 환경악화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 등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최근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유기농식품의 공동구매사업에 특화한 생협조직들이 최근까지 가장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조직화된 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소비, 적정한 농업과 환경의 보전 등

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민우회생협 등 네 갈래의 생협들은 2011년 말 현재 공급액이 6,137억원에 달하고 조합원은 52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생협조직은 인간다운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세력과 더불어 공정무역, 도농교류, 교육문제 해결, 의료 등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 설립된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의료생협연대에 소속된 15개의 의료생협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의 설립을 준비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도 2010년 기준 71개에 달하고 있으며,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작년 6월 기준 총 140개로 청소서비스, 재활용, 집수리, 돌봄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발전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협동조합의 설립 활성화 기대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2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협동조합의 설립노력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5인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이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조직운영비용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적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에서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상당하여 전통적 협동조합의 장점이 발휘되기 용이한 부문, 즉 의료, 육아, 자동차정비, 이사서비스, 친환경농식품 등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업무의 동질성이 높아 노동자협동조합의 조직운영비용이 낮은 부문 즉, 마을버스, 택시, 택배서비스, 법률, 상담, 리서치서비스 등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역의 공통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 영역이다. 노인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자녀의 방과후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취약노동계층의 노동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등 각종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사장의 독단적 운영의 폐해를 안고 있는 적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이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요체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생태주택협동조합이나 공동주택협동조합도 전망이 높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마을극장, 마을의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카페 등 문화예술영역에서의 협동조합 소유의 문화공간들이 확대될 수 있다.

연대역량과 효과를 극대화하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조직화하여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업과 활동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답을 때 한국 협동조합의 존재가치가 빛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체제의 구축과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의 마련 등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타 시민조직 등이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혹은 사회적경제협의회 등의 설립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조직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참여하게 될 때, 연대역량과 효과는 커지고 이러한 전통적 협동조합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2

왜 협동조합인가

1. 왜 협동조합인가

한 발짝만 바다 바깥으로 나서면 ‘다른 경제’와 ‘다른 기업’이 널려있는데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여러 사람의 ‘협동’으로 꾸려가는 기업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숭배하는 자본주의 기업만이 유일한 기업인 줄 알았다.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란 필요악에 순응했으며, 1명의 천재가 거액 연봉을 독차지하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외눈박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눈 하나만 달고 사는 줄 안다.

“제목에 ‘협동조합’ 단어는 넣지 맙시다.”

1년 전 여름, 공동 집필을 제안하면서 누군가 꺼냈던 말이다. 협동조합의 이미지가 산뜻하지 못하고, 그래서 책이 잘 안 팔릴 거라는 이유였다. 협동조합을 알리는 책을 쓰면서, 협동조합을 숨기자니? 불만스러웠지만 동의했다.

그로부터 1년 뒤, <99%를 위한 기업 : 세계의 협동조합을 배우다>을 세상에 내놓는다. 당당하게 표지에 협동조합 글자를 새겼다.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 사이에 제법 많이 바뀐 덕분이다. “협동조합 기업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다. 시장경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형태이다.” 그렇다. 지금이 옳고, 1년 전이 틀렸다. 협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기업 형태가 아니고, 사회와 경제라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선진적인 기업이다.

2011년에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협동조합 기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다. 협동조합 기업과 자본주의 기업이 공존하는 세상을 목도했다. 유레카! 협동조합이었구나! 비판만 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언론인의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희열을 느꼈다. 그동안 줄기차게 재벌 경제를 질책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찝찝함을 안고 살았다. 그래서 어찌자고? 대안이 뭘테?

자본가의 탐욕을 옹호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의 곳곳에 성공한 대기업의 사회 독점을 우려하는 문장을 함께 남겨 놓았다. 시장의 유일한 사업자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자본주의 기업들의 질긴 욕망을 일찌감치 간파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이 서로 뭉치고 나누는 호혜의 힘으로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자본주의 독점의 치명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는 기업이다. 복지나 자선단체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책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킨다. 협동조합은 99%의, 99%에 의한, 99%를 위한 기업이다.

‘다른 경제’와 ‘다른 기업’이 시장에서 작동하는 해외의 구체적인 현장을 이 책에 담았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협동조합으로

시작할까, 아니면 주식회사로 할까? 어느 쪽이 우리 사업에 더 적합할까?” 어떤 기업 형태가 나와 우리의 사업에 맞는지, 선택지를 놓고 살펴보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한다.

주식회사만이 유일한 기업 형태라고 강권하는 세상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불행을 확대재생산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만 그렇게 살아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표되는 2012년 12월부터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이제는 학교 친구들, 뜻 맞는 동업자들, 농민과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기업’을 세울 수 있다. 자! 협동조합으로 기업하자!

2. 협동조합 기업들은 참 많다

1970년대의 축구 스타 요한 크루이프는 “독재자 프랑크 총독이 후원하는 팀에는 가지 않겠다”고, 레알마드리드의 거액 영입 제안을 뿌리쳤던 일화로 유명하다. 그는 프랑코 독재의 핍박을 받은 FC바르셀로나를 선택했고, 바르셀로나 시민의 영원한 영웅으로 사랑받고 있다. FC바르셀로나는 2010년까지 유니폼에 상업성 로고를 달지 않은 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신 에이즈 어린이들을 돕는 유니세프(Unicef)의 로고를 가슴에 달았다.

‘축구 그 이상’을 표방하는 FC바르셀로나의 홈페이지에는 대기업 구단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17만 명의 주민이 주인이고, 그들의 출자로 이뤄진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6년 임기의 구단 회장도 17만 주민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협동조합의 천국이다. ‘시장(마트) 간다’는 말을 ‘뫼(협동조합 coop의 이탈리아어 발음) 간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일상생활에 싹틔줄처럼 녹아들어 있다. 우리의 이마트에 해당하는 최대 소매업체가 소비자협동조합이고, 건설사와 은행은 물론이고 박물관도 공연장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밀리아로마냐에서 협동조합은 단순한 대안 경제가 아니다. 전체 경제의 30%를 지탱하는 또하나의 주류 경제이다.

“스위스에는 ‘미그로 키즈(kids)’와 ‘코프 키즈’가 있다.” 미그로와 코프스위스(코프는 coop의 독일어 발음)는 스위스 소매시장의 40%을 분점하는 양대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스위스의 어린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부모가 가입한 협동조합에 따라 ‘미그로’ 아니면 ‘코프’의 매장을 드나들면서 자란다. 스위스 사람들의 협동조합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동쪽 앞바다로 5km가량 달려 나가면 거대한 풍력발전기 20대가 줄을 지어 하늘을 가르다. 이 풍력발전기의 주인은 미들그룬덴 발전협동조합이다. 발전소 설립자금을 출자한 8,600명의 코펜하겐 시민 조합원들이 풍력발전기를 건설했다.

미국을 자본주의 기업의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협동조합의 뿌리가 깊다. 고급 오렌지의 대명사인 썬키스트는 118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기업이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6,000여 감귤 생산농가가 힘을 합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해낸다. 세계 4대 통신사로 꼽히는 미국의 AP 또한 협동조합 기업이다.

유럽의 부자 지역인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전체 경제를 협동조합 기업들이 이끌어 간다고? 프로축구팀 FC바르셀로나와 미국의 썬키스트도 협동조합이라고? 우리에게는 참 의아하게 들리지만, 한반도 바깥세상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많은 협동조합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상

당한 몫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소매업과 금융 및 농업에서 협동조합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스위스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굴지의 협동조합 소매기업들이 그 나라 업계의 선두권을 차지한다. 협동조합 은행의 영업 규모는 이미 유럽 전체의 20% 이상을 점유한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Credit Agricole)과 네덜란드 1위인 라보뱅크(Labo Bank)가 대표적이다. 두 은행은 농민들을 상대로 한 신용사업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독일의 데체트(DZ)뱅크도 협동조합 은행이다.

뭐니뭐니해도 협동조합 하면 농업이다. 선진국의 농업은 협동조합과 한몸이다. 농업을 끌고가는 기관차는 자본주의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업이다. 유럽 최대의 청과물 도매 회사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Greenery), 덴마크 양돈 산업의 90%를 장악한 데니쉬 크라운, 이탈리아 최대의 우유 생산업체인 그라나놀로(Granorolo), 이들 브랜드의 공통점은 원예 농가, 양돈 농가 또는 낙농가들의 공동 출자로 세운 협동조합 기업이다. 농업 개혁의 모범국이라는 뉴질랜드의 농업을 이끌고 있는 폰테라(낙농업체)와 제스프리(키위 수출업체) 또한 자국 농민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한 협동조합 기업이다.

3.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2011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사무실에서 수사네 베스트하우젠을 만났다. 인터뷰를 하던 중,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즉석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협동조합과 통상의 자본주의 영리기업의 운영원리를 비교한 간단한 그림 한 장을 그려주었다.

논리는 간명했다. (다른 모든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노동자 임금 75유로를 지불하고 100유로의 자전거를 생산해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25유로를 남기면 자본가가 투자이윤으로 가져가는 구조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자본주의 영리기업과 달리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다.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75유로의 임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자전거 값 100유로를 유지한다. 유일하게 달라지는 것은 자본가의 몫이다. 투자이윤 25유로가 통째로 0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절약한 25유로가 장애인 노동자들의 급여로 지급된다.

장애인을 더 고용했다고 기존 노동자들의 급여를 끌어내리지도 않고 더 비싼 값에 자전거를 내놓지도 않으니,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착한 기업이란 우호적인 이미지를 얻어 시장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수사네는 말했다.

이 그림을 응용하면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원리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존재이유는 출자자인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물건을 값싸게 파는 데에 있다. 농민들의 생산자협동조합은 주인인 조합원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자들의 출자로 설립된 노동자협동조합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고객에게 좋은 조건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협

동조합들과 차이가 있다.

각 협동조합의 성격을 규정짓는 열쇠는 25유로의 행방이다. 25유로를 판매가격 인하분으로 돌려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면? 소비자들이 조합원인 소비자협동조합일 것이다. 농민들의 생산자협동조합이라면, 25유로를 농산물 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쓸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돌릴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에서는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예금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25유로를 쓰게 된다.

아마도 현실의 협동조합에서는 25유로 중 상당액을 미래 투자를 위한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외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잉여금이 생길 때마다 적립하는 것을 꼭 필요한 미덕으로 여긴다.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같은 경우는 100여 년 전부터 (수사네 그림의 25유로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전액 적립하는 관행을 고수했다. 그렇게 쌓은 내부유보금만도 총 자본금 300억 유로(약 44조4천억원)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규모에 이른 것이다. 라보뱅크는 막대한 내부유보에 힘입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뜰히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3대 은행’으로 선정됐다.

4.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자

유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 협동조합 기업의 뿌리도 자라나고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에 해당하는 한살림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생협)이 대표적이다. 두 협동조합의 연매출을 합치면 벌써 5천억원을 넘어선다. 강원 원주와 경기 안성에서는 주민들이 세운 의료생협이 활약하고 있다. 과잉진료의 거품을 덜어내고 조합원 환자들을 위한 참의료를 실천한다.

최대 우유업체인 서울우유도 한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기업이다. 서울우유의 조합원(목장주)들은 주식회사인 매일우유, 남양우유와 거래하는 목장주들보다 우유 납품가격을 더 높게 받아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 사업과 가치의 양면에서 건강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협동조합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농협과 수협 등이 있지만, 정부의 관리를 받는 반관반민의 단체이거나 직원들의 회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 전혀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한 주택협동조합이나 발전협동조합도 하나 없다. 사회적 기업 또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대부분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이란 실체가 가까이에 없으니 어떻게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꾸려 나갈지 알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는 자본주의 기업만이 기업이라는 하나의 등식 말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협동조합에 관한한 총체적인 까막눈이었다.

제도도 미비했다. 그동안은 농협과 수협, 신협, 생협 등 8개 특별법에 정해진 8개 종류 이외의 협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요건이 까다로웠다. 다행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자유로운 설립을 막는 제도적 족쇄는 풀렸다.

4년 이상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이 있다. 재능교육의 교사 노동자들은 2012년 5월 10일로 파업 1600일을 맞았다.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땀 너무 축더라 인생도 시리

고..." 그날 서울 혜화동로터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문화제를 벌이면서 불렀던 노래의 한 소절이다.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재능교육의 교사들이 협동조합 기업 방식을 이해하고 또 협동조합 설립이 진즉에 자유로웠더라면, 이들의 처지가 지금과 조금은 달라졌을까?

사실 학습지 사업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한 대상이다. 학습지 사업의 핵심 자산은 교사들과 교재개발 역량. 대규모 공장설비가 없으니 투자재원 조달 부담도 적다. 교사들과 일부 직원들의 뜻을 모으기만 하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기업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부모를 조합원으로 동참시키면 다수의 충성 고객 확보도 가능해 보인다. 파업 4년 동안 구축한 사회적 신뢰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다. 학습지 교사들이 '참 재능교육'이란 브랜드를 내걸어, 기존의 재능교육을 능가하는 협동조합 기업을 꾸려가는 꿈을 꾀본다.

마찬가지로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기업을 세우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사람들의 '협동'을 이뤄내기만 하면, 고율의 수수료를 한두 명의 대주주에게 뺏기지 않아도 된다. 출판인들은 저자들과의 공동출자로 출판협동조합을 세우고, 미술인들은 갤러리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다. 블로거나 코펜하겐에서는 그런 협동조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투자 중심의 기업이라면 주식회사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협동조합은 대규모 자본 조달에서 불리하다.

이런 상상도 해본다.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네 빵집들이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협동조합 기업을 세운다. 은퇴한 자영업자들의 일자리인 커피전문점이나 '김밥천국' 사업도 사실은 협동조합 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독자적인 협동조합 브랜드를 구축한 뒤 안전한 로컬푸드로 만든 고품질로 승부하는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반대하던 동네슈퍼들도 전국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결성해 'LG25'와 경쟁하는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발한다. 동네 상권을 보호한다고 대형 마트의 휴업일을 강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동네 상인들이 코나드(CONAD)라는 전국적인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코나드는 이탈리아 소매업계 2위에 올라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통신소비자들이 협동조합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수천명 정도의 조합원 가입에 머물러 있지만, 100만 명 이상의 통신소비자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가 종국적인 사업의 목적이다. 이동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해 직접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고, 100만 소비자의 힘으로 저렴한 단말기 출시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이동통신 요금의 파격적인 인하와 기능이 단순한 20만 원대 단말기의 출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사〉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의 소중한 역사적 산물이다. 6만여 주주들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참언론을 구현하라고, 쌀짓돈과 돌반지 성금을 냈다.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운전기를 구입하고, 신문을 발행했다.

〈한겨레〉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도, 협동조합 방식의 지배구조를 채택할 것이다. 1987년 설립 당시에는 협동조합으로 신문사를 세울 수도 없었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자는 내부의 인식 공유도 없었다. 〈한겨레〉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한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지냈던 셈이다.

〈한겨레〉의 기업 목적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단순한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올곧은 신문 만들자는 뜻을 보탠 것이지, 이익 배당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겨레〉는 주식회사로 운영되기에, 종종 사업과 가치의 충돌로 인한 실존적 고뇌를 겪게 된다. 비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광고주인 대기업과 타협하고, 관계사들을 압박하는 일이 있었다. 당장 돈되는 사업으로 달려가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한겨레〉가 협동조합으로 바뀐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모든 사업과 보도 뿐 아니라 내부 인력관리와 자회사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한겨레〉만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가정 먼저 작성하지 않을까?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조합원총회에서는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바르게 바꾸는데 〈한겨레〉가 언론으로서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있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경영 참여를 뒷받침하는 지배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민주적 소통이 강화되면서 독자 충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의사결정은 더더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딱 맞는 새로운 기성복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적기업들은 다수가 주식회사 법인격이었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주식회사여야 하는 줄 알았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몸에 이익 극대화를 요구하는 주식회사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과 가치의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라는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소망한다, 서로 협동하는 세상을

우리의 협동조합 토양은 척박하다. 싹도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 가장 화급하게 필요한 것은 협동조합 교육이다.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가르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초중고교에서 협동조합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근처 생협과 협력해 협동조합 운영을 경험하고, 구내매점을 학생들 스스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협동조합 교육은 실천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학부 과정에 협동조합 강좌를 개설한 곳은 건국대와 경북대, 단국대 등 대여섯 곳에 불과하다.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농수산대학에서조차 협동조합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농 후계자들에게 농업은 협동조합이란 제1명제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공회대의 협동조합 대학원 운영은 의미있는 도전이다.

새로 태어나는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란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다. 더 많이 모일수록 힘이 불어난다. 이탈리아의 대형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에서는 다른 협동조합 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한다.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 또한 협동의 힘으로 극복해낸다. 이탈리아의 레가(LEGA)라는 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해마다 각 협동조합 잉여금의 3%를 각출해 적립한다.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협동조합의 신설 및 사업 확장을 거둬고, 경영난에 빠진 협동조합 직원들의

재교육과 이직을 지원한다.

우리는 읍면의 농협들끼리 공동 사업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 농협이 생협과 손잡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이러서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6. 선택

바르게 살고 싶은 젊은이가 있다.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 평범한 기업체에서 일하면서 남들보다 너무 못하지 않은 급여를 받고 싶어한다.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정직한 기업이면 좋겠다. 보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한발 빠른 승진을 위해 동료의 사다리를 걷어차야 하는 회사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젊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이 얼마나 될까?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이 많은 세상을 소망한다. 승자독식을 신조로 삼는 천박한 자본주의 기업들만 있는 세상은 건강하지 않다. 협동조합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젊은이들에게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갈구하고 그런 문화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몸에 맞는 기업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성사회의 의무이다.

장애가 있거나 부모의 한쪽이 외국인이라고 손가락질당하고 동성애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과거가 있었다. 이제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 열 사람이 양보하고, 혼혈을 다문화로 존중하고,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자본주의 기업만을 강요하는 세상은 다양한 인간성을 끌어안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배타적인 경쟁을 추동하기보다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기업이 더 경쟁력을 인정받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덴마크의 메르쿠르라는 협동조합 은행에서 만난 메테 튀센은 “우리 기업에서는 가치가 급여의 일부”라는 감동적인 말을 했다. 영리 은행보다 고위직의 급여는 낮지만 일에서 느끼는 보람이 크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탈리아 최대의 우유생산 기업인 그라나놀로 협동조합의 클라우디아 실바니는 “그전 직장에서는 경쟁이 무척 심했는데, 여기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서로 협력한다”고 협동조합의 기업문화를 자랑스러워했다. 클라우디아는 ‘야후 이탈리아’에서 7년간 일하다가 옮겨왔다.

메테와 클라우디아처럼 협동조합 기업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 “가치가 급여의 일부”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참고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7.25] [충청남도조례 제3705호, 2012.7.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기업
 - 라. '협동조합'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 근거해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 아.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도의회 의원
 4. 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와 시·군,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제16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조세감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8.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9.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10. 기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17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